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323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식의원 (2202021)	2024.7.1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24.11.25.)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이성권의원 (2205432)	2024.11.11.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 사 제2소위에 직접 회부(24.11.2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4.11.25.)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11.25.)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2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 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8.)는 법안심 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 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원 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 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 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성 유해물질에 소방공무원이 노출되어 질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그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보장을 위해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역학조사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 나.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관의 특수· 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함)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 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 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 다.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을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역학조사"를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 과
- 3.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 제14조에 따른 암등록

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암정보 사업에 관한 자료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 그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7조(역학조사)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역학조사) ①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 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u>소방공무</u> -----소방공무원 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 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 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 <신 설> 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 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 강진단 결과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 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 <신 설>

- <u>다)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u> 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 3.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암정보 사업에 관한 자료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 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

 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 방청장이 정한다.

<신 설>

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 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③ <u>역학조사</u>의 방법, 대상, 절 <u>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u>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 장이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 그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